

학회지 게재논문 투고규정

제 정 1997. 7. 1
개 정 2001. 6. 16
전면개정 2003. 6. 28

제1조(투고자격) 투고자는 본회의 회원임을 원칙으로 하고, 명예회원이나 특별회원도 투고할 수 있다. 그러나 편집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비회원도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제2조(논문의 내용) ① 투고할 논문은 원칙적으로 환경법학과 관련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학회발표논문과 연구논문은 다른 학회지나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원고의 체제와 분량은 원고작성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3조(투고요령) 투고할 논문은 원고작성지침에 맞추어 디스켓과 출력본 3부를 출판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원고작성) ① 원고분량은 A4용지 15매 내외(도표, 사진, 참고문헌 포함하여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하여야 한다. 분량초과시에는 게재료 외에 별도로 초과 1매당 2만원을 자비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고체제는 다음 각호로 하여야 한다.

(1) 표지는 한·영제목, 필자명 및 소속기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국문은 영문 또는 독문 등의 외국어초록, 영문 또는 독문 등은 국문초록을 100 단어 내외로 첨부하여야 한다. 초록에는 검색편의를 위한 주제어를 5개 이상 지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원고는 본문, 요약, 참고문헌 순으로 정리한다.

(4)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저자(First Author)와 공동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구분하고 주저자·공동저자의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원고작성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1) 목차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I . 로마숫자(중앙으로)

· 1. 아라비아 숫자(2칸 들여쓰기)

·(1) 팔호 숫자(3칸 들여쓰기)

·(가) 팔호 한글(5칸 들여쓰기)

·1) 반팔호 숫자

(2) 원고는 한글로 작성함으로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로 표기할 수 있으나, 한자의 사용은 10% 내외로 한다.

(3) 인용문헌은 다음의 방식으로 한다.

가. 인용문헌의 전거는 각주로 처리하여야 한다.

·논 문 : 필자, 논문제목, 계재학술지명, 권, 호수, 연도, 면

·단 행 본 : 저자, 서명, 출판사, 연도, 면

·기념논문집 : 저자명, “논문제목”, ○○○ 선생기념논문 「기념논문집명」, 면수.

·판 결 인 용 : 대법원 19○○. ○○. ○○. 선고, ○○다○○○○ 판결(법원공보 19 ○○년, ○○○면) 또는 대판 19○○. ○○. ○○, ○○다○○○○

나. 반복인용되는 문헌의 경우는 저자 또는 필자명, 전개서 또는 전개논문 등으로 표시하되, 출판연도를 표시하여 구분한다.

·논 문 : 필자, 전개논문, 출판연도

·단행본 : 저자, 전개서, 출판연도 또는 저자, 전개서(상 또는 하), 출판연도

다. 동일한 저자의 판을 달리하는 단행본을 인용하는 경우는 저자명, 판수, 연도를 표시한다.

(4) 참고문헌의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단행본의 경우

·동양서 : 저자, 「책명」, 출판사, 출판연도

·서양서 : 저자, 책명(이탤릭체), 출판지 : 출판사, 출판연도

(독일문헌의 경우 출판사를 생략한다)

나. 논문의 경우

·동양서 : 필자, “논문명”, 「간행물의 명칭」, 제 권, 제 호(발행연월)

·서양서 : 필자, 논문명, 간행물의 명칭(이탤릭체), 권수, 호수, 발행연월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